

의안번호	2200814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4. 6. 25.
추 계 번호	24B12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1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5,100만원(연평균 1,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6조의2)	51	—	—	—	—	51	1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 목표와 방향 2. 가사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가사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5.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가사서비스종사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3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의3 (실태조사)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2항)	재량·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의2(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신설	○	—
2	안 제6조의3(실태조사) 신설	—	• 미대상 － 현행법의 제21조(실태조사)¹⁾를 삭제하고, 유사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고용노동부는 현행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재정없이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나, 본 추계서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은 유사 사례를 토대로 산출
 -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비용은 2023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 평균값을 토대로 산출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조사주기: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과 2031년(2026년+5년)에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
 - 소요재정: 2023년 기준 5,100만원
-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1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5,100만원으로 추계됨

제21조(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6조의2)	51	—	—	—	—	51	1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